

「청렴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입니다」

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

수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귀하

(경유)

제목 긴급)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: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9826(2020.12.6.)

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-15184(2020.12.7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2.6.)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으로 판단하여 수도권은 '사회활동의 엄중 제한'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로,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, 기간은 **12월 8일(화) 0시부터 12월 28일(월) 24시까지 3주간**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특히, 수도권의 경우 12월 8일(화) 0시부터 학원(독서실 제외), 교습소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되고, 그 외에는 집합금지 됨을 알려드립니다.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의 경우에도 2.5단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아래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수도권(2.5단계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>

구분	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수도권 (2.5단계)	학원 (독서실 제외), 교습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집합금지 ※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,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▶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~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, ②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※ 음식섭취는 금지이나,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
	독서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
4.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불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2.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,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[보도참고자료]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(최종) 1부. 끝.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



주무관 **김다희** 평생교육팀장 **정승일** 평생교육건강과 2020. 12. 07.
장 **정은지**

협조자

시행 평생교육건강과-15365 (2020. 12. 7.) 접수 ()

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(마두동,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) / www.kengy.go.kr

전화 031-900-2893 /전송 031-907-8093 / rlflaks@goe.go.kr / 비공개(6)

직장 내 괴롭힘, 예방이 우선입니다.